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0232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한신후, 황서웅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한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 C

3. D

피고, 피항소인 4. E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호

피고 2 내지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지현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합2380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1) 피고 B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1) 피고 E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

다)에 관하여 2015년 12월경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 E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E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가.항의, 피고 E에 대하여 청구취지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C, D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9행, 9면 7행, 11면 13행의 각 “P로부터”를 각 “H으로부터”로 고친다.○ 7면 9행의 “원고과”를 “원고와”로 고친다.

○ 13면 16행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13면 17행의 “알았다고 자인한”을 “알게 된”으로 고친다.

○ 14면 14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복사하여 입수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2020. 1. 13.자 준비서면(7면)을 통하여 2016. 11.

22.경에는 F이 이 사건 제2선박을 취득하여 피고 E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한 바 있다.

③ 원고는 그 후 2016. 12. 14. F과 O 사이에 거제시 N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 채무자인 F이 사업체를 비롯한 재산 전부를 그의 처와 아들에게 빼돌려 원고가 F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없었던 사실, F이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655호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기재하였다. 아울러 위 소장에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1심 판결문을 증거서류로 첨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16. 11. 22. 무렵 위 형사사건 1심 판결문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F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한 경위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면서도 2016. 11. 22. 무렵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2017. 3. 23.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위 무렵에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로부터도 이미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 6. 14.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 15면 16행의 “명의신탁약정 해지권을 행사하였고”를 “명의신탁약정 해지권을 이 사건 2019.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행사하였고”로 고친다.

○ 16면 19행부터 1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명의의 이 사건 제2선박이 F의 의사에 따라 M에게 처분됨으로써 피고 E와 F 사이의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처분 과정에서 피고 E가 F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019.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F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권을 행사할 당시 피고 E와 F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F의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17면 5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가 H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하였고, 피고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D, C는 F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면서 F와 이 사건 제1선박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선박의 시가 상당액인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단지 그가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당해 명의수탁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명의신탁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 그 채권침해에 대한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선박을 운용한 업체인 'R'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피고 C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F이고, 피고 D는 'R'의 사무장으로, 피고 C은 경리로 근무한 사실, F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선박을 매수하면서 피고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21. 피고 C의 명의로 위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C, D가 F과의 약정으로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명의신탁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인 F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검찰청 통영지청에 F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피고 C을 강제집행면탈방조 등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검찰청 통영지청은 2019. 12. 16. F과 피고 C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19년 형제9766호)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초재191호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 D,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B,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완, 판사 배용준, 판사 정승규

[별지]

목 록

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선 (104톤)

선박의 종류와 명칭	기선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선 질	강
총 톤 수	104톤
기관 종류와 수	디젤엔진 1기
추진기 종류와 수	나선헤진기 1개
진수 연월일	
국적취득 연월일	2014년 1월 2일

2. 부산광역시 기선 (191톤)

선박의 종류와 명칭	기선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 질	강
총 톤 수	191톤
기관 종류와 수	디젤발전기 1기
추진기 종류와 수	나선헤진기 1개
진수 연월일	<끝>

